

## 쓰러진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 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사건번호 2002두6811

### [개판요지]

원심은 원고의 나이 및 평소의 건강상태, 근무 및 생활 환경, 업무의 내용 등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에 누적되어 온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겹치는 바람에 현기증을 일으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넘어진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

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지방세법에 관한 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두2662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적

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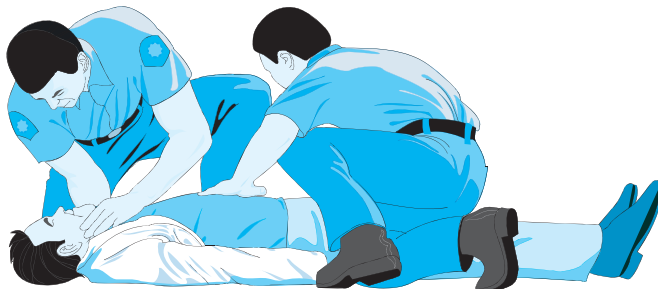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

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5.28선고2002두1014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및 평소의 건강상태, 근무 및 생활환경, 업무의 내용 등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누적되어 온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겹치는 바람에 현기증을 일으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넘어진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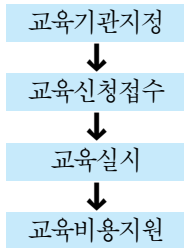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조물책임(PL)법의 2003년도 정책방향

## 1. 제조물책임(PL) 교육 지원

- ① 지원대상
  - ① PL기초과정 :중소기업 임직원 2,000명(업체당 2명이내)
  - ② PL전문과정 :중소제조업 임직원 1,000명(업체당 2명이내)
  - ③ PL사내교육 :중소제조업 1,000개사(소규모 제조업 포함)
- ② 지원한도
  - ① PL기초과정 및 PL전문과정 :교육수수료의 50%
  - ② PL사내교육 :업체부담 10만원, 정부지원 20만원
- ③ 지원조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PL교육이수
- ④ 지원체계



##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① 사업내용
  - ① PL대응활동확산을위한설명회 개최 지속추진
  - ② 최고경영자의 PL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CEO 교육강화
  - ③ PL정보의 효율적 제공을위해PL전용홈페이지를개설·운영

## ② 추진계획

- ① PL설명회 개최
- ② PL홈페이지 개설·운영 :PL법해설, 업종별메뉴얼, 전문가현황, PL사고사례 등 각종 PL정보와 PL교육신청코너, FAQ Q/A 코너 등 수록
- ③ 각종 CEO 교육과정에 PL제도교육과목 개설

## 3. PL대응 메뉴얼 개발·보급

- ①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PL대책을 손쉽게 추진토록하기 위해업종과기업규모에 맞는PL대응메뉴얼을개발·보급
- ② 개발분야
  - ① 업종별 메뉴얼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후결정(10종내외)  
-완구,문구류,가스·압력기기류,놀이기기류,산업기계·공구류,통신기기류,운송장비류,사무기기류,의료기기류,식품·약품류등
  - ② 소기업PL대응메뉴얼 :중기협중앙회에서추진

##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 ① 사업내용
  - ① 중소기업의 PL사고예방 및 방어시스템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업체별 컨설팅비용(700만원)의 50% 350만원)
  - ②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하여 PL기술지도를 희망하는 기업은 1일당 15만원 이내의 지도비용 지원
- ② 지원계획
  - ① PL대응체제구축 컨설팅 :중소제조업 200개사  
-사업계획공고

- 컨설팅신청 접수
- 지원대상업체 선정
- 컨설팅 실시 및 평가
- ② PL 관련 기술지도 : 중소기업 · 유통업(각 지방중소기업청)
- ③ 기술개발지원 우대 : PL 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④ 지방중기청 시험시설 개방 : 제품의 안전성 시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5. PL 대책 추진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 ① 사업내용
  - ① PL 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이 PL 대책추진을 위해 생산 · 가공시설 대체, 설계 · 제조기술개발, 시험 · 검사설비 도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지원

### 6. 중소기업 PL 단계보험제도의 운영개선

- ① 사업내용
  - ① 중소기업의 PL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강구 : 보험요율이 높은 품목의 요율인하 방안 검토
  - ② PL 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 추진
  - ③ 생산물 손해배상 종합보험 개발 추진 : PL 사고, 리콜비용, 하자처리 등을 종합담보하여 부담완화
- ② 추진계획
  - ① 현행 PL 단체보험의 보험요율인하 방안 검토
  - ② PL 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 ③ 「생산물 손해배상 종합보험」 개발
  - ④ PL 단체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 7. PL 관련 애로 및 분쟁 해결 지원

- ① 사업내용
  - ① PL 사고의 신속 · 공정한 해결 지원 : 중소기업 PL 분쟁조정기구와 13개 업종 PL 센터 연계 지원

- ② 지방중기청 PL 상담실을 통한 PL 관련 애로 해소
- ② 지원계획
  - ① 중소기업 PL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지원
  - ② 지방중기청 PL 상담실을 통한 지원
  - ③ 하도급 실태조사시 PL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 · 시정

### 8. PL 우수기업 인증(평가)제 도입

- ① 사업내용
  - ① 「PL 우수기업평가제」 도입으로 기업의 제품안전 대책 추진 유도
  - ② PL 우수기업을 우대하여 여타기업의 PL 대책 추진을 도모
- ② 추진계획
  - ① PL 우수기업 심사(평가)모델 개발 : 전문가관을 통한 연구개발 및 전문가 위크샵 활용
  - ② 심사원 자격기준 마련 및 심사원 양성(100명)
  - ③ 「PL 우수기업인증(평가)제 운영요령」 제정
  - ④ 인증(평가) 업무 운영 기관 및 인증 기관 지정
  - ⑤ 시범인증 실시

### 9. 기타 PL 지원 대책 추진

- ① 중소기업 PL 대책협의회 개최
- ② 중소기업의 PL 대응 실태 모니터링
- ③ 중소기업 PL 대응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적 회 추진 